

컴퓨터와 프라이버시

卞在玉*

I. 서 론

우리 사회는 정보화사회로 급격히 진입했다. 최근 우리 생활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컴퓨터의 이용이 급증하여 생활문화 전반에 걸쳐 전산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향은 컴퓨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과 더불어 더욱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가지 통계자료가 입증해 주고 있다. 정보산업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4조원선, 1990년의 GNP점유율 7%, 1991년 국내시장규모 2백25억달러, 매년 10%성장 예상과 2006년 국내시장규모 9백 4억달러로 추정되고, 하드웨어부문에서는 개인용컴퓨터 보급대수 1백50만대, VTR 4백만대, 휴대용전화기 3만5천대를 넘어섰다고 한다.¹⁾ 이러한 수치는 3·4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는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보통신망(INS:Information System Network), 부가가치통신망(VAN:Value Added Network), 쌍방향 TV(Community Antenna TV), CAPTAIN(문자도형정보통신망), 하이텔 등 첨단기술에 의한 뉴미디어가 우리나라에서도 일부는 실용화되어 高度情報社會에 들어가려고 한다. 최근 미국 등에서는 가정용 개인컴퓨터(Home Personal Computer)와 텔레비죤 및 오디오 시스템을

* 嶺南大學校 法科大學 教授, 法學博士。

1) 서울신문, 1992. 1. 1. 29쪽.

겸하는 멀티미디어가 나오고 있다하는 바, 이러한 뉴미디어의 우리나라에 의 도입도 시간문제라 할 것이다.²⁾

이러한 정보화사회에 당면하여 새로운 갖가지 현상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즉 정보공개, 프라이버시 보호, 기업비밀의 보호, 소프트웨어 보호, 정보범죄 문제, 국제통신망에 있어서 통신주권문제 등등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보화사회는 정보독점으로 인한 인간소외 및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인격의 大量死라는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균형있는 정보화의 발전을 기하고 국민생활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정보화의 어두운 그림자를 없애는 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당면 문제들 중 본인은 컴퓨터와 프라이버시에 대하여서만 논의하기로 한다.

II. 컴퓨터의 기능

情報化社會에 있어서 정보산업 지식산업을 수행하는 주인공은 컴퓨터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情報化社會는 컴퓨터화된 社會를 말한다. 무형의 정보가 권력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가시적인 물질이나 에너지 보다 높은 附加價值를 가지고 유통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모두 컴퓨터의 덕분이다. 여기서 컴퓨터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 자료처리 · 저장 · 활용능력

컴퓨터는 무한한 資料處理 · 貯藏 · 引出能力을 가지고 있다. 방대한 情報 · 知識을 축적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나 즉시 引出할 수 있다. 在來式의

2) 변재옥,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 한국행정연구, 1권 3호, 1992. 12. 한국행정연구원간, 참고.

서류철이나 수동식에 의한 자료정리에서 해방되어, 있을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컴퓨터에 入力整理된다. 인간의 손에 의한 자료의 분석·정리는 유한한 것이지만 컴퓨터에 의한 자료처리는 한계가 없다. 따라서 情報蒐集에 있어서도 페어킨슨의 법칙이 적용되어, 情報處理能力이 증대되면 될 수록 더 많은 資料를 수집하려는 의욕이 생기고, 情報는 정보를 부른다고 한다. 수집된 정보는 종류별 목적별로 data bank를 형성한다. 오늘날 情報化 시대에 있어서는 실로 아는 것이 힘이며, 情報는 권력이요 지배의 도구이다. 산업 조직의 복잡화, 관료조직의 거대화, 사회과학자료의 수집·분석 등의 경향에 따라 우리는 역사상 情報를 가장 많이 산출하는 社會에 살고 있다.

2. data bank 간의 network

컴퓨터의改良은 그 기계를 사용하는 자들 사이에 자료의 共有를 촉진시켰다. 컴퓨터 언어의 표준화와 한 언어계에서 다른 언어계에의 번역의 실현은 컴퓨터로 하여금 서로 직접 교신하여 자료의 授受交換을 가능하게 했다. 즉 data bank는 통신망을 통하여 서로 자료를 수수전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각 data bank는 개별적으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다.³⁾ 이 혁신은 경찰과 같은 동일한 大組織內의 기관끼리 정보의 교환을 가능하게 했으며, 생명보험회사나 홍신소 등과 같이 서로 독립한 조직간에도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발전 중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교육이나 은행 등 각분야에 있어서의 Data Center 또는 Data Pool의 등장이다. 이것은 어느 특정분야의 情報를 총집결하여 종합한다는 편리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중앙자료은행에 접근하여 情報를 입력하고 인출할 수 있다.

특히 근래에 와서는 컴퓨터에 모뎀(MODEM)을 설치하여 일반가정용 전화선에 연결하면 중앙자료은행과 개인용 컴퓨터(P.C) 끼리, 그리고 P.C와 P.C끼리 팩시밀리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것은 사람의 입을 통한 말

3) A.F. Westin, Privacy and Freedom, N. Y. Atheneum, 1967, p.158 이하 참고.

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극히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많은 정보를 순식간에 거리에 관계없이 국제적으로도 교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여 컴퓨터와 通信網이 결합하여 高度情報通信網을 형성하게 되고, 국가간의 자유로운 정보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3. 주민등록증의 역할

컴퓨터에 입력되는 정보가 사람에 관한 것일 때에는 각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기호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동처리에 의한 人的 資料銀行과 그 연결망은 기술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數千 數億의 인구 중에는 同名異人도 많고 생년월일이 같은 자도 많으므로,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일련번호일 수 밖에 없다. 이것을 標準統一識別票(Standard Universal Identifier)라 한다. 미국에서는 Social Security Number가 이에 해당 된다.⁴⁾ 이 번호는 당초에는 사회보장행정에 쓰이기 위한 것이었으나, 지금은 납세신고서 운전면허증·여권·학생등록·증권소지자등록·재향군인입원등록·은행 거래·외국인등록 등 사용이 광범하게 되어, 신원을 증명하는 標準統一識別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물론 住民登錄證番號가 모든 Computer file의 Standard Universal Identifier가 될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우리는 모든 서류 주민등록증번호를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만이 가진 이 고유번호에 모든 정보가 수집되도록 되어 있다. 인적 정보의 집중관리와 그 활용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에게 번호를 붙이는 것은 상품의 生產 在庫 販賣管理를 위하여 統一商品番號制(Universal Products Code System)를 채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4. 인간소외 · 정보조작 · 소수 테크노크라트의支配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은 끝없이 전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화사회에

4) Records, computers and the Rights of Citizens, Report of the secretary's Advisory Committee on Automatee Personla Data System's U.S. Dept. of HEW., MIT, 1973. p.108 이하 참고.

서 高度情報化社會로 접어들게 된다. 이러한 첨단과학기술에 입각한 정보화사회가 과연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가 문제된다. 여기에는 비판론(비판론)과 낙관론(옹호론)이 있다.⁵⁾

樂觀論에 의하면 첨단과학기술을 하부구조로 하는 정보화사회가 제공하는 혜택은 산업사회의 그것에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서 인간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고 행복과 자유·평등을 약속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된다고 한다. 즉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예를들면, 공장자동화(F.A) 사무자동화(O.A)로 인한 高生產性의 실현, 가정자동화(H.A) 가정직장(H.O) 가정은행처리(Home Banking) 홈 쇼핑(Home Shopping) 등으로 인한 생활의 편리 여가활용, 多種目少量생산체계에 의한 욕구충족, 노동의 질적 변화로 인한 화이트 칼라層의 증대, 물질적 풍요 빙곤 추방 질병퇴치 등으로 인한 계급갈등의 해소, 새로운 藝術영역의 확대, 性役割의 균등화, 환경정화 재해방지 자연보존 등등 수많은 혜택과 밝은 미래를 약속한다고 한다. 이러한 낙관론을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것은 미국의 未來學이라 한다.

또한 情報流通의 면에서 보면, 정보량의 비약적 증대와 동시에 질적 향상, 정보의 전달속도의 가속화에 의한 필요한 지식의 적극적 흡수가 실현되고, 이러한 정보전달의 체계는 종래의 代議民主主義를 지양하고 直接民主主義 또는 參與民主主義를 가능하게 한다.⁶⁾

그러나 悲觀論에 의하면 정보화사회의 진행으로 인하여 등장한 거대한 조직과 기술은 非人間化를 촉진하는 통제불능의 힘을 가진다고 한다. 이러한 비판적 견해는 A.Huxley나 G.Orwell 등 이른바 反유토피아(Dystopia)작가들의 공상으로부터 현대관리사회가 초래한 人間疎外를 주장한 H.Marcuse나 J.Habermas와 같은 철학자 및 과학기술자 등등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간결하게 요약하면, 지속적 기술발달로 인한 생의 가치

5) 김문조, 정보화사회의 성격 및 노동세계의 변화, 정보사회연구 창간호, 1989, 가을, 통신개발연구원간.
p.11 이하.

6) 안청시, 정보화사회의 민주주의, 정보화사회-도전과대응, 서울대 출판부, 36면 이하참고.

나 의미의 상실, 기술합리성의 지배로 인한 가치전도현상, 정보망발달로 인한 사생활 침해, 정보독점이나 정보소외, 기술관료의 대두와 권력집중화, 문화적 억압, 거대도시화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이같은 제반 문제점들은 크게 비인간화(dehumanization) 및 정보불평등(information inequality)으로 재정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정보화사회에 대한 비판론의 취지 중에서 個人情報保護라는 관점에서 人間疎外 · 情報操作 · 少數엘리트의 지배에 대하여 상론할 필요성이 있다.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전산화된 個人情報銀行의 존재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감시하에서 살고 있다는 자유의 위축을 느끼게 하고, 그 위력앞에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된다. 우리들은 우리에 관한 情報를 半強制로 또는 강제로 공개하기 쉽으면서도 公 私의 Data Pool 속에 쏟아넣고 있다. 情報蒐集機關은 예컨데 정보기관, 수사기관, 국세청, 여권과, 시청, 동사무소 등의 행정기관과 병원, 신용카드회사, 흥신소 등 사기업이다. 이들 정보수집 기관은 개인이 갖다 주는 자료에 만족치 않고, 스스로 수집한다. 마음만 먹으면 갖가지 Orwellian Technology를 동원하여 아무리 은밀한 개인정보라도 찾아내고야 만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 · 보유 · 사용된다. 각기관에 흩어진 자료를 한곳에 집중시키면, 어떤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國民은 모두 Back Number를 부친 被管理者들이며, 제품의 통일 Code Number처럼 번호로서 취급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기록의 감옥에서 살게된다.

어항속의 금붕어처럼 우리들의 알몸을 감출 곳이 없다. 그 누군가가 감시기록하고 있으리라 생각되면, 그 언동이 달라진다. chilling effect를 느낀다. 言論 · 集會 등의 자유는 헌법상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무의미 해진다. 이것은 Dossier Dictatorship이며, Computerized Nazism이다.⁷⁾

현대가 지식사회 정보화사회인 만큼 우리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

7) Hearings on Retail Credit Co. of Atlanta, Before a Subcommittee on Invasion of Privacy of House Committee on Government Operations 90th Cong., 2d Sess. p.125(1968).

다. 그러나 그 정보란 조석으로 신문 방송이 갖다 주는 상업用의 消費情報인 것이 보통이며, 공해이기가 일쑤이며, 무엇이 어떻게 되는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관리정보는 입수하기 어렵다.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는 기밀이라는 이름아래 정부에서만 보관했기 때문에 일반국민은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國民總白痴化를 의미한다. 관리정보의 결핍에 그 이유가 있다. 정치 경제 군사 등 중요한 정보는 권력자 또는 소수의 知的 엘리트에 집중되고 그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국민에게는 정보빈곤의 현상이 생긴다. 국민은 불필요한 소비정보의 흥수 속에서도 관리정보의 빈곤을 누리게 된다.

독점자본주의에서 獨占情報主義로 이행되고 일반국민은 관리정보의 빈곤 또는 필요한 지식의 결핍으로 第二의 文盲期에 들어선다. 따라서 정보를 가진 자가 불리한 정보의 엄폐, 유리한 정보의 유출 등으로 정보 및 여론조작을 해도 일반국민은 그것을 알 수 없다.⁸⁾ 이것은 민주정치의 종말이며 관리사회의 진행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에 있어서 알 권리 또는 정보공개청구권은 중요한 기능을 다함을 알 수 있다.

이상 우리는 정보화社会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살펴 보았거니와, 이것은 인간적인 모든 제도에는 長短과 明暗이 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직시하고 그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옹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대옹책으로서 첫째 정보편중 정보독점을 없애고 정보 공유 및 국민의 情報主權을 확립하기 위한 情報公開制度에 대한 법적 대책을 생각할 수 있고, 둘째로 상실된 자아를 회복하고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위하여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보호하는 情報統制制度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후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8) 國際討論, プライベシーの危機, 學陽書房(1973), p. 80참고.

III. 個人情報活用

개인정보는 그 종류와 목적에 따라 정부기관·사기업·의료기관·연구소 등에 의하여 관리된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오늘날의 유통경제의 구조가 신용거래 카아드(Credit Card)를 출현시켰다는 점이다. 이것은 전에는 아무런 혼적을 남기지 않았던 거래행위를 명시하게 되는 바, 어디서 언제 어떤 물건을 샀다는 것이 나타나고, 여행 오락 등의 사생활도 기록에 남기게 했다. 그러한 정보에 의한 결정은 논리성과 정확성을 갖출 수 있다. 그래서 인구의 유동성이 높은 자유사회에 있어서 정부나 사기업은 방대한 人事記錄을 작성하기 위한 조사활동이 필요하며, 이것에 근거하여 사람을 채용·해고하거나 금전대부·외상거래·여권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인적 정보를 관리하는 자료은행의 수가 많아져 가고 있다.

1. 미국의 경우

미국에는 많은 개인정보 자료은행이 있는데 이것을 다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 흥신소 1966년 위싱턴 포스트지의 조사에 의하면 사설조사기관인 소매신용조사회사(Retail Credit Co.)는 7,000명의 조사원을 고용하고 있으면서, 광범위한 목적을 위하여 사람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4,200만인에 관한 기록을 보유하고, 년간 1억불의 수입이 그 활동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위싱턴 D.C에 있는 어느 흥신소는 과거 또는 현재의 주민 250만인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⁹⁾

또 어떤 전국적 규모의 신용조사회사(또는 흥신소 Credit Bureau)는 미국총 인구의 약 반수인 1억인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다. 그 내용은 수입·채권

9) A.F.Westin, op. cit., p. 159이하.

· 지불기록 · 은행예금 등 경제적 형편이 주된 것이지만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돈을 빌려 줄 금융업자나 외상으로 물건을 줄 백화점주인이 고객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사생활, 예컨대 음주 · 연애모험 · 약물중독 정신건강 · 혼인력 등 알려지면 불쾌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뉴욕의 어느 흥신소는 8백만인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해마다 7만 5천건의 명예훼손적 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한다. 이용자인 자동차보험회사 등의 입장에서 본다면 보험가입자가 사고라도 낸다면 몇 만 또는 몇 백만불의 지출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일체의 자료를 대소를 막론하고 빠짐없이 알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의 신용조사회사들은 미구에 전미국인구 2억 2천만인 전부를 File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b. 정부기관 미국방성은 1천 4백만인의 이력과, 인종차별문제 월남전에 관련된 데모에 참가한 폭도 7백만인에 대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했다. 연방인사위원회는 8백만 공무원의 경력을, FBI는 수자는 분명치 않지만 10만의 공산주의동조자와, 8천만 미국시민의 지문과 소문 등의 미확인 정보를 갖고 있다 한다.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은 매년 8천만통의 납세신고서를 수리하는데, 거기에는 성명 · 나이 · 직업 · 심리이상유무 · 결혼 · 가족상황 · 전주소 · 직업력 · 이혼력 · 자동차운전 여부 · 배심원의 경력 · 상금은 물론 각종의 현금여부 등이 기록되어, 그 사람의 종교 · 사상경향 · 가치관 등을 엿볼 수 있다. 연방보건교육후생성은 1억6천5백만인의 자료를 갖고 있으며, 연방주택국은 년간 주택용자신청인 약 백만인에 대하여 사설탐정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결혼생활의 파탄은 주택용자금상환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조사하게 한다.

2. 우리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유효한 행정목적의 달성이거나 권력장악 등을 위하여

정당·내무부·건설부·국세청·경찰서·동사무소·각종 정보기관 등 국
가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은행·통신소·백화
점·신용카드회사 등 사업도 그들의 사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에 관한 통계가 없다. 그 이유
는 첫째 이것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알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고, 둘째 정
보공개법이 없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신문 잡
지 등의 보도를 기초로 국가가 운영하는 개인정보은행의 실태를 정리해 보
면 다음과 같다.¹⁰⁾

a. 행정전산망사업 여기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우선 내무부가 추
진하는 주민등록관리 입력항목은 기본사항 23항목, 병력사항 16항목, 예비
군 5항목, 인력동원 12항목, 자격면허 4항목, 생활보호 4항목, 의료보장 2항
목 등 모두 78개 항목으로서 상당히 상세하게 구성되어 있다. 만약 관계공
무원이 마음만 먹는다면 이것이 쉽게 외부에 유출되어 특정개인의 신상이
광범하게 공개된다.

b. 국세청 납세자가 제출하는 세금 계산서에서부터 각종 금융자산자료,
부동산 거래자료, 골프회원권소유자료까지 망라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각종 세무조사와 과세에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 3천2백만 필지
의 토지자료까지 입력, 단말기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재산보유상태를 한눈
에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국세청의 수입품목자료, 외무부의 여권자료, 의
료보험 관련자료, 외환거래자료 등이 전산테이프로 축적돼 있다. 국세청은
이같이 방대한 개인자료가 딴 목적에 쓰이지 않도록 일정한 목적에 따라 제
한적으로 이용하도록 내부 규제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내부 구성
원간에 확고한 인식이 성립돼 있지 않는 한 불법사용은 가능하다.

c. 치안본부 치안본부는 지금까지 형을 받은 방대한 수의 전과자 범죄
사실 리스트를 전산망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전산망에는 전과자 뿐 아니라
일단 제3자에 의해 고소된 사건이라도 자동적으로 입력된다. 때문에 전혀

10) 함영준, 당신의 비밀 이렇게 공개된다, 월간조선, 월간조선, 291면 이하

사실이 아니라도 누군가 자신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면, 그 사실이 전산 기록화 돼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주목해야 될 점은 컴퓨터 단말기가 일선 파출소까지 설치돼 기록유출이 용이해졌다는 사실이다. 만약 경찰관과 친분이 있으면, 특정인의 범죄사실 자료를 빼내어 보기 어렵지 않다. 또한 경찰이 갖고 있는 시국사범 관련자, 운동권 학생 리스트, 노조간부들의 명단이 민간기업의 요청에 의해 유출돼, 기업의 신입사원 모집시 자료로 사용되기까지 한다고 한다. 이같은 블랙리스트로 인해 현재 웬만한 기업의 신규사원 채용에 있어서 과거 운동권 경력이 있는 대졸자들은 거의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몇년전 과거 운동권 출신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곱군데 회사에서 모두 퇴짜를 맞아 낙담끝에 자살한 어느 서울대 출신 청년의 얘기가 결코 희귀한 사례가 아닐 것이다.

d. 노동부 노동부가 운영중인 고용관리시스템에는 노조간부와 근로기준법관련 수배자의 명단을 입력하고 있는데, 이것을 임의로 삭제 변경해도 누가 이를 했는지 알 수 없는 것으로 들어나 심각한 인격침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e. 國家公安電算網 국가공안전산망에 관해서는 일반국민의 궁금증은 지대하나 전혀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보안사 윤석양 상병이 폭로한 「보안사 민간사찰기록카드 컴퓨터디스크」의 내용은 국민에 큰 충격을 주었다. 지금까지 막연히 주요인물을 사찰 기록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그 컴퓨터디스크은 보안사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실증해 주었다. 자신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나의 무슨 약점을 파악하고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 이것이야 말로 자유로운 인격 발전에 위축 효과를 주고도 남는다. 윤석양 상병이 폭로한 보안사의 기록카드에 의하면, 모야당 총재의 개인특성난에는 「사상이 불투명하며 권모술수와 기만으로 정치생활 30년을 일관한 신뢰성이 전혀 없는 위험인물」로 서술돼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바는 정보수집자가 어떤 사람의 언동을 어떻게 평가하여 기록하느냐이다. 착오에 의한 기록이나 잘못 판단된 기록은 그 사람의

후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장본인은 자신에 대한 잘못된 기록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인정보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문제 외에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무제가 더 심각하다. 예컨대 행정전산망의 자료를 토대로 유권자의 재산·신분·학력 등을 기초로 그 성향 분석을 하고 그것에 따라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된 행정전산망이 특정 정당에 이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 정보사회에 있어서, 정보는 사업에 계는 돈이며 정부에게는 권력의 기초이다. 정보를 쥐는 자가 우위를 점하고 지배력을 가진다. 피지배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감시를 받으며 평생을 통하여 기록의 감옥(Record-Prison)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한 인생이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기록은 시작된다. 임신하면 태중발육과 정이, 출산하면 체중·건강상태·눈의 빛깔 등이, 사망했을 때에는 일시·장소·원인 등이, 생애중에는 중요한 사건 등이 모두 기록된다.

일세대전 조오지 오웰의 유명한 소설 「1984년」은 금붕어 항아리 속의 인간생활(Fishbowl Existence of Human Life)의 참상과 정치 기술 사회적 혁신이 가져오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지적한 바 있었다. 약 350년전 영국의 청교도들은 과거의 모든 속박과 기록으로부터 깨끗이 도피하여 미국이라는 신천지(new world)에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인들은 대륙의 어디를 가도 기록의 꼬리는 미행을 한다. 따라서, 오늘날 미국시민은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숨을 곳도 없이 자기의 알음을 드러내고 있다. 언제나 감시 기록당하고 있다는 공포는 자유에 대한 오싹하는 위축감의 효과(chilling effect)를 준다. 이러한 사정은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는 개인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므로 각자는 어떤 발언이나 행동을 하기전에, 그것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를 두려워 하여 헌법

상의 표현의 자유등을 행사할 수 없는 심리적 위축을 느낀다. 정보화사회,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Data Bank Society 또는 Dossier Society에 있어서는 자기의 능력보다는 자기가 Computer file에 어떻게 기록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는 과장된 표현도 없지 않다.

IV. 컴퓨터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대응책 - 私生活保護法의 제정 -

정보화社会의 부정적 측면 중에 중요한 것은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가 수집 활용되어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된다는 점이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도 정보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하여 갖가지 첨단기술을 동원하여 수집하고 이를 전산망을 통하여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투명사회 또는 기록사회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모든 점에 대하여 누군가가 환하게 알고 있으므로, 혼자 있게 할 권리 또는 사행활을 침해 폭로 받지 아니할 권리라는 의미의 고전적인 프라이버시의 권리은 모두 없어져 버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는 옛날과 같은 프라이버시는 없어졌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우리들에 관한 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누구에게 유통하고 있으며, 그 정보는 과연 정확한가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된다는 요청이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내용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개념을 정의하면 「국민이 자기에 관한 정보의 전파를 통제하는 권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대적 · 적극적 의미의 프라이버시의 권리은 종전의 「혼자있게 할 권리」처럼 소극적 · 포괄적 · 전국가적인 것이 아니라, 실정법이 인정하는 구체적인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이 권리의 내용은 각국의 입법의 태도에 따라 다르다. 미국 · 서독 · 캐나다 · 프랑스 · 일본 등이 프라이버시보호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을 추려보면 ① 자기의 기록에의 접근 열람 복사청구권, ② 잘못된 기록에 대한 정정청구권, ③ 자기의

기록의 유통 이용에 관하여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이다.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自己情報의 유통에 대한 통제권」이란 적극적 의미로 파악할 때에, 이 권리는 개인의 인적정보를 수집 처리 활용하는 모든 公私의 기관에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s of 1974)은 국가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자기정보를 통제하는 권리를 규정했고,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은 사기업인 혼신소에 대하여 자기정보를 통제하는 권리를 규정했다. 또한 은행을 통한 고객의 각종 거래행위에 관한 기록의 유출에 대한 보호는 금융 프라이버시법(Financial Privacy Act of 1978)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다. 1988년 컴퓨터連結 및 프라이버시保護法(The Computer Matching and Privacy Protection Act of 1987)을 제정하여 상이한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data bank는 상호 연결하여 개인정보를 교환할 수 없게 했다.

선진국에 있어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고전적인 「혼자 있게 할 권리」가 주로 판례로서 먼저 확립되고, 다음으로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정보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며, 그 후속조치로 개인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는 순서를 밟아 왔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산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입법의 노력은 꾸준히 계속되었다. 1989년 과학기술처의 「전자계산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관련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률안」이 마련되었으나 폐기된 바 있고, 1991년 총무처도 「공공기관의 전자계산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공청회에 회부된 바 있었다. 또한 1991년 5월 15일 국무총리훈령 제250호 「전산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私案을 작성하여 발표한 예도 있어 여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였다. 1994년 1월 1일 법률 제4731호로서 「公共機關의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法律」이 제정되어, 프라이버시 보호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화일의 명칭 · 보유목적 · 기록

범위 등을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총무처장관 등은 통보받은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분실·유출·변조 등이 없도록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보주체는 자기정보열람청구권·정정청구권을 가지며,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V. 맺는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그동안 사생활 보호를 열망했던 국민의 열망이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은 자기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을 뿐이며, 이 법이 국민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 첫째 프라이버시의 권리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가를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법은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처리에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는데 그치며, 사업·신용조사소등 사적 부문에 의하여 자행되는 개인정보의 남용을 보호하는 법은 아니므로 사적부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 속수무책이다. 따라서 이 방면의 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